

CARES 법안에 따른 파산법 변동사항 안내 (2020년 4월)

안녕하세요,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정된 파산법 변동 사항들에 대해 간략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27일부로 CARES 법안 (The new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이 제정되었습니다. CARES 법은 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한 일부 혜택을 확장합니다.

CARES 법안 1113 조에 따르면,

- 중소기업이 Chapter 11 (비즈니스 구조조정 파산법) 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채무 한도액이 7백 50만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전 중소기업 파산 채무 한도액은 2백 72만 5천불이었습니다.
- 개인의 경우 Chapter 7 (완전 파산), Chapter 13 (분할 상환을 통한 채무조정) 을 신청할 경우 CARES 법안에 따라 정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 지원금은 월별 소득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Chapter 13 채무조정 신청 시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가처분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Chapter 13 신청 후 채무 분할 상황을 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질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분할 지불하고 있는 페이먼트 플랜을 첫 페이먼트 일자로부터 최대 7년까지 늘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자유로운 코로나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CARES 법안은 Chapter 7 과 13 파산 신청 시 코로나 지원금이 파산 처분 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파산 신청자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금 자체는 파산 처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곧 채권자들이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미국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을 세금보고 시 사용한 개인 은행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 은행 계좌가 초과 인출될 경우, 은행에서는 초과인출로 인한 채무를 해당 계좌에 입금된 코로나 지원금으로 상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개인이 특정 은행에 신용 계좌를 가지고 있고 해당 계좌의 지불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은행에서 동 계좌에 입금된 코로나 지원금으로 초과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결된 CARES 법안에 따라 제정된 일시적 파산 관련 규정들은 2021년 3월 27일까지 시행되며, 해당 규정을 통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조속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개정된 파산법 하에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조언을 필히 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자: Hannah Chung 판사 (hycbanklaw@gmail.com) | 수정: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 번역: 김필라 변호사 (phkimlaw@gmail.com)

공지 사항: 본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조지아 한인 변호사협회 및 소속 변호사들과 본 안내서를 읽는 사람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가지고 법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위에 적힌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되며 본 안내서는 오직 정보습득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적 조언은 전문적인 변호사와 고객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만 수용하셔야 합니다.